##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2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정춘생·서왕진·차규근

황운하 · 서미화 · 이해민

박용갑 • 신장식 • 김선민

강경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 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노동자의 날(5월 1일)
- 11. 어버이날(5월 8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0.</u> 노동자의 날(5월 1일)
<u>&lt;신 설&gt;</u>	<u>11. 어버이날(5월 8일)</u>
<u>10</u> . (생 략)	<u>12</u> . (현행 제10호와 같음)